

2020년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9.(금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정현,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03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74건(안전번호 제2020-49929호~5097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49929호, 49930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뮤지컬 ‘밀녹’ 영상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뮤지컬 공연 시장 및 실황 녹화 앨범 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0-49930호는 안전번호 제2020-49929호와 동일한 안전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49931호는 블로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크래킹 파일을 제공하고 크래킹 파일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49932호, 4993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만화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0-49932호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함.

안건번호 제2020-49934호는 민원인 회사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쇼
핑몰에서 무단 이용한 사안임. 해당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
호대상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제품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68건은 삭제 또는 전
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
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0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민원인 신고 내용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정보를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C 위원: 이견이 없음.
- D 위원: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 신고 내용과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

2. 안건상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씨제이이엔엠(주)', '일본 NTV', 'TV조선', '롯데엔터테인먼트', '소니픽쳐스코리아', '유니버설픽처스', '넷플릭스', '한컴오피스', 'tv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49929호~50971호로, 46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74건의 게시물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992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이고, 안건번호 제2020-4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해당 안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이므로 시정권고보다는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에서 관련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이 심의대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인지 확인할 수 없음.
- A 위원: 댓글이 달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 목록을 확인하면서)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을 대조해보겠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에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속 해당 시간대의 댓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49929, 499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정황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반복 심의 요청된 안건번호 제2020-49930호는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B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임. 보호원에서 불법복제물을 채

(안전번호 제2020-49931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보호원 직원이 댓글로 암호를 요청하여 크래킹 파일에 적용한 결과 정상적으로 정품 인증이 완료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크래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일어남.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0-499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원래는 체험판을 다운로드한 후 30일이 지나면 정품을 구매하여 정품 인증을 해야 함. 하지만 해당 안전은 정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정품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래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A 위원: 동의하는 바임.
- D 위원: 이견 없음.
- C 위원: 동의하는 바임. 다만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맞는데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 B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리얼 번호를 배포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음. 해당 부분은 크래킹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시리얼 번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임. 해당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내용을 검토보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9931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2호, 4993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각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49932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 ♠♠♠♠ ♠’를 2,050 캐시에 판매함. 해당 게임물은 2020. 3. 26. 출시되었고, 정품 판매가는 64,800원임. 배급사는 ‘ㄱㄱㄱ ㄱㄱㄱㄱㄱㄱ’이며, 일본 게임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 URL에 직접 접속해보겠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49933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3호는 안전번호 제2020-49932호와 다른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를 50 포인트에 판매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0-49932호, 4993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웹하드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복제물 게시물이 삭제되었을지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안전번호 제2020-49932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고, 안전번호 제2020-49933호는 통상적인 시정권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동의하는 바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A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9932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고, 안전번호 제2020-4993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4호는 실명이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민원인 회사에서 제작한 썸네일 및 상세 이

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함. 민원인은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제품 판매 사이트 URL 주소와 민원인 회사 앞으로 등록된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는 사이트는 'XXXX'임. 현재 게시물은 존재하나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두 게시물 간에 동일한 썸네일과 상세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해당 제품의 제조사를 알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제조사는 민원인의 회사인 'XX'로 확인됨.

(민원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보면서)민원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과거에도 해당 안전과 유사한 심의 사례가 있었음.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유통채널 간에 분쟁이 있어 심의를 요청한 안전이었음.

- B 위원: 동일한 제품을 'XX'에서 판매하고 'XXXX'에서 판매할 때 제품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과 같은 사례라고 생각함. 만약 A 유통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별도로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는데 B 유통업체가 A 유통업체의 제품 사진과 이미지를 도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임. 하지만 해당 안전은 앞서 설명한 사례와 달리 민원인 회사의 제품 판매를 위해 해당 이

미지를 이용하는 것일 뿐임.

- 성원영 전문위원: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사진은 제품 판매만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이며,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원인의 회사가 사진 등의 권리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B 위원: 민원인의 실명이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의 실명은 '♪♪♪'으로 민원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아 '♫♫ ♫♫♫♫'의 직원으로 추정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민원인의 제품을 판매해주면 민원인의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판매사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타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A 위원: 한편으로는 병행 수입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병행 수입의 경우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안건을 법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과거에 '☆☆☆', '★★'의 독점 수입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병행수입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take down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음. 하지만 해당 사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로 알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4993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광고 사진도 저작물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안전의 사진이 최소한의 창작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의문스러움.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보고한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안전은 부결 처리함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D 위원: 해당 제품 사진은 저작물성을 충족한다고 생각함. 시정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49934호는 부결 3명, 가결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결 의견이므로 안전번호 제2020-499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9935호~5097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트롤: 월드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455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트롤: 월드투어'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2020. 4. 29. 극장과 VOD에서 동시 개봉한 작품으로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대여, 약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현재 오프라인에서 상영 중이며 해당 영화의 배급사는 '유니버설 픽처스'임.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498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1993. 12. 24. 개봉하였으며 2020. 5. 1. 재개봉함.

(영화 '범죄해결 특수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501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범죄해결 특수반'을 15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2020. 5. 28. 개봉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on'에서 4,5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521호는 웹하드에서 영상저작물 '언더워터'를 한글 자막이 포함된 mkv파일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2020. 5. 27. 개봉하였으며 2020. 6. 18. 현재 상영 중임. 저작권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임.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59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콜 오브 와일드'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의 저작권사는 '월트디즈니'이며,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임. 2020. 5. 14. 개봉하였고 2020. 6. 18. 현재 상영 중임.

(영화 '그레텔과 헨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75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그레텔과 헨젤'을 판매한 사안임. 미국에서 2020. 1. 31. 개봉하였고 국내에서는 2020. 6. 24. 개봉 예정임.

(영상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0-50818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 14회를 1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16부작 tvn 드라마이며 2020. 6. 14. 방영 종료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9935호~50971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49935호~5097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49935호~5097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49930호, 제2020-49934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49929호, 제2020-49931호~49933호, 제2020-49935호~5097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홍지만